

# 당헌 개정안 공고

제9차 당무위원회(2021.4.23.)에서 당헌 개정안을 발의하였기에 당헌 제108조(당헌 개정안 공고와 의결)에 의거, 당헌 개정안을 공고합니다.

## <당헌 개정안 주요 내용>

1.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대의원 수 재조정
2. 윤리감찰단 감찰활동 범위 구체화
3. 시·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 명확화
4.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강화하고 시·도당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 시에도 적용
5. 당헌 제100조(감산기준) 정비

## 당헌 개정(안)

### □ 제3장 대의기관

○ 제15조(지위와 구성) :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대의원 수 재조정

- 제2항, 200명 이하의 대의원 → 300명 이하의 대의원

※ [참고] 2020년 8월, 제4차 정기전국대의원대회 준비를 위한 당헌 정비 사항으로 세계한인민주회의 추천 대의원을 300명 이하에서 200명 이하로 조정

현행	개정(案)
<b>제3장 대의기관</b>	
<p>제15조(지위와 구성) ①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~20.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21.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<b>200명</b> 이하의 대의원 &lt;개정 2020.8.28.&gt;          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	<p>제15조(지위와 구성) ①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②전국대의원대회는 다음 각 호에 따라 구성한다.                      1.~20.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21. 재외국민당원 중 세계한인민주회의가 추천하는 <b>300명 이하</b>의 대의원                      &lt;이하 생략&gt;</p>

### □ 제4장 집행기관

○ 제29조(당대표의 지위와 권한) : 윤리감찰단 감찰활동 범위 구체화

- 제6항, 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 → 불법·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

현행	개정(案)
<b>제4장 집행기관</b>	
<p>제29조(당대표의 지위와 권한) ①~⑤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⑥당대표는 선출직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<b>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</b> 감찰활동을 위해 상시기구인 윤리감찰단을 둔다.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	<p>제29조(당대표의 지위와 권한) ①~⑤ &lt;생략&gt;                      ⑥당대표는 선출직 공직자 및 주요 당직자의 <b>불법·일탈행위 예방 등을 목적으로</b> 감찰활동을 위해 상시 기구인 윤리감찰단 둔다. 윤리감찰단의 구성과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</p>

## □ 제8장 지방조직

- 제65조(권한) : 당헌 제65조에 규정한 시·도당상무위원회의 권한 명확화
  - ‘상별안의 확정’ → ‘포상안의 확정’ 으로 자구수정

※ [참고] 시·도당 윤리심판원 관할 사건 징계결정 확정 절차가 2018년 8월 25일 개정(시·도당상무위원회 심의의결로써 확정→각급 윤리심판원이 심사 의결로 확정)되었으나, 당헌 제65조가 정비되지 않은 상태로 유지되었음

현행	개정(案)
<b>제8장 지방조직</b>	
<p>제65조(권한) 시·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시·도당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<b>상별안</b>의 확정</p> <p>3.~7. &lt;생략&gt;</p>	<p>제65조(권한) 시·도당상무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권한을 갖는다.</p> <p>1. &lt;생략&gt;</p> <p>2. 시·도당윤리심판원장과 심판위원의 임명에 대한 인준 및 위원회가 심사·의결한 <b>포상안</b>의 확정</p> <p>3.~7. &lt;생략&gt;</p>

## □ 제12장 공직선거

- 제86조(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) : 검증위원회 여성 위원 비율을 강화하고 시·도당 검증위원회 구성 시에도 적용
  - 제3항, 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,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  - 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현행	개정(案)
<b>제12장 공직선거</b>	
<p>제86조(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) ①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·도당에 공직선거후</p>	<p>제86조(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) ①당대표는 공직선거 예비후보자 및 후보자의 자격심사와 도덕성 검증을 위하여 최고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중앙당과 시·도당에 공직선거후</p>

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중 외부 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③중앙당 공직자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정원이 짝수일 경우 여성위원이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이 되도록 구성하고, 위원회의 정원이 홀수일 경우 위원장을 제외하고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8.28.>

④시·도당 공직자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 구성 시 제3항과 같이 위원구성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. <신설 2020.8.28.>

⑤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의 구성, 업무 및 운영 등 필요한 사항은 당규로 정한다. <개정 2020.8.28.>

보자검증위원회를 설치한다.

②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5명 이하의 위원으로 구성하되, 이 중 외부 인사를 위원회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으로 구성하여야 한다.

③제2항에 따라 공직선거후보자검증위원회를 구성할 경우에는 여성이 정원의 100분의 50 이상 포함되어야 한다.

④ <삭제>

⑤→④ <현행과 같음>

- 제100조(감산기준) : ①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공직자에 대한 조건 명확화
- ②합당을 통해 복당한 지도 탈당경력자로 포함하여 경선 감산 적용

현행	개정(案)
<b>당헌 제100조(감산기준)</b>	
<p>제100조(감산기준) ①공천관리위원회는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 이상 마치지 않은 선출직 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해 보궐선거를 유발하는 경우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. 다만 대통령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 &lt;개정 2019. 7. 1&gt;</p> <p>②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(소</p>	<p>제100조(감산기준) ①공천관리위원회는 <u>선출직공직자가 각급 공직선거후보경선에 참여하기 위하여 본인의 임기를 4분의 3이상 마치지 않는 경우 해당 선거에서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)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.</u> 다만 대통령 선거 후보자와 당규가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.</p> <p>②각급 선출직공직자평가위원회의 평가결과에서 해당 평가대상 중 하위 100분의 20(소</p>

수점 이하는 절사한다)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. <개정 2019. 7. 1>

1.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
2. 시·도지사, 자치구청장·시장·군수, 광역·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. 이 경우 시·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·기초의원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 적용한다.

③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,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.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.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9. 7. 1>

1. 경선 불복 경력자 : 당규 제10호제38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. 이 경우 경선 감산은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한다.

2. 탈당 경력자 :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자. 단,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 <개정 2020.8.28.>

3. 징계 경력자 :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

수점 이하는 절사한다)에 해당하는 평가대상자가 해당 공직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 다음 각 호에 따라 본인이 얻은 득표수의 100분의 20을 감산한다. <개정 2019. 7. 1>

1. 지역구국회의원과 비례대표국회의원이 지역구국회의원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
2. 시·도지사, 자치구청장·시장·군수, 광역·기초의원이 각급 지방선거 후보경선에 참여하는 경우. 이 경우 시·도당 및 지역상무위원회에서 비례대표광역·기초의원 순위 선정을 위한 투표를 실시하는 때에도 동일 적용한다.

③경선 불복 경력자와 탈당 경력자, 제명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제99조 및 제100조 제1항의 적용 없이 본인이 얻은 득표수(득표율을 포함한다. 이하 같다)의 100분의 25를 감산한다. 당원자격정지 처분을 받은 징계 경력자는 100분의 15를 감산한다. 이 경우 해당 대상자는 다음 각 호에 따른다. <개정 2019. 7. 1>

1. 경선 불복 경력자 : 당규 제10호제38조로 정한 경선후보자의 자격을 획득한 후 탈당하여 무소속 또는 타당 후보로 출마한 경력자. 이 경우 경선 감산은 각급 선거마다 계속 적용한다.

2. 탈당 경력자 : 당해 선거일 전 150일을 기준으로 최근 10년 이내에 탈당한 자. 이 경우, 합당 등을 통해 자동 복당하는 경우도 포함한다. 단, 법령으로 당원가입을 금지하고 있는 직업상의 이유로 탈당한 경우는 예외로 한다.

3. 징계 경력자 : 제명 및 당원자격정지 이상의 징계를 받은 자